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 10. 23.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4년 10월 14일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4년 10월 16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8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4.10.20)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정국장 이철호)

가. 제안이유

-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조례에 수수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는 업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수수료 면제 관련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 (안 제5조)
- 수수료 반환 규정 신설 (안 제6조제2항)
 - 청구원자가 신청한 증명이나 열람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수수료 반환
-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법률용어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기영)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수료 면제대상을 관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국가 유공자 등 보훈대

상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고 청구권자가 신청한 증명이나 열람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수수료를 반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5조에 수수료 면제 관련 상위법령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수수료 면제대상을 확대하였으며,
- 안 제6조에 청구권자가 신청한 증명이나 열람 내용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기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음.

○ 검토결과 수수료 면제대상을 관계법령에 맞게 재정비하여 보훈대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지침에 따라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자치법규의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후생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으며, 조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짐.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18 호
----------	--------

제출연월일 : 2014. 10.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조례에 수수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는 업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수료 면제 관련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 (안 제5조)

나. 수수료 반환 규정 신설 (안 제6조제2항)

○ 청구권자가 신청한 증명이나 열람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수수료 반환
다.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법률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139조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없음

(2) 부패영향평가 : 평가실시(의견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실시(의견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4.9.18~10.8, 20일간) :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수수료의 감면)” 을 “(수수료의 면제)” 로 하고, 각 호의 외의 부분 중 “영등포구청장” 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으로 “제3호부터” 를 “제2호부터” 로 하고, “영등포구” 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제2조제2호에” 를 “제5조에” 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자가 신청하는 증명” 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자가 신청하는 증명” 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로 “자가” 를 “사람이” 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자가 신청하는 증명” 을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자가 신청하는 증명” 을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을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 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제6조 제목 “(징수시기)” 를 “(징수시기 및 수수료의 반환)” 으로 하고,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청구권자가 신청한 증명이나 열람 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중 “조례” 를 “조례의”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수수료의 감면) 영등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은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u>제3호부터 제9호까지</u> 해당하는 증명은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발급은 제외한다.</p> <p>1. ~ 2. (생략)</p> <p>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u>제2조제2호</u>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p> <p>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p> <p>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p> <p>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p> <p>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p> <p>8.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p>	<p>제5조(수수료의 면제) <u>서울특별시</u> 영등포구청장은 -----</p> <p>-----</p> <p>제2호부터-----</p> <p>서울특별시 영등포구-----</p> <p>-----</p> <p>-----</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u>제5조에</u> -</p> <p>-----</p> <p>4. -----</p> <p>-----</p> <p><u>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u></p> <p>5. -----</p> <p>----- <u>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u></p> <p>6. 「<u>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 -----</p> <p>--- <u>사람이</u> -----</p> <p>7. -----</p> <p>----- <u>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u></p> <p>8. -----</p> <p>----- <u>참</u></p>

<p>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p> <p>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p> <p><u><신 설></u></p> <p>제6조(징수시기) 수수료는 증명이나 열람을 청구할 때 그 청구자로부터 징수한다.</p> <p>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p> <p>9.-----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p> <p>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p> <p>제6조(징수시기 및 수수료의 반환) ① 수수료는 증명이나 열람을 청구할 때 그 청구자로부터 징수한다.</p> <p>② 청구권자가 신청한 증명이나 열람 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p> <p>제7조(시행규칙) ---조례의----- -----.</p>
---	--